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78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김예지 · 임종득 · 윤용근
김소희 · 송석준 · 이달희
신성범 · 정성국 · 김대식
김선교 · 최수진 · 안철수
안상훈 · 유용원 · 주호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출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

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 및 제4호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대표자에 대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4. 대표자,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86조제1항 제1호 중 “제22조의5제5항을”을 “제22조의5제6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5제6항을”을 “제22조의5제7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 ----- ----- ----- ----- ----- ----- ----- ----- ----- --. 다만,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대표자에 대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 ----- -----제1호 및 제4호에 ----- -----.

1. ~ 3.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대표자, 임원 또는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

-----.

1. <u>제22조의5제5항을</u>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u>제22조의5제6항을</u>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 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생 략) ② ~ ⑤ (생 략)	1. <u>제22조의5제6항을</u>----- ----- ----- 2. <u>제22조의5제7항을</u>----- ----- -----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